

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

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귀하에 대한 감치를 귀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고자 합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115조).

납 세 자	성 명 호 (상 호)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	
	주 소 (사업장)			
국세 체납 명세(총체납세액: 원) (단위: 원)				
세 목 명	납부기한	내국세	가산금	계
감치 내용				
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감치요건	※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			
감치 기간	<u> </u> 일 (최대 30일) ※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 종료			

국세징수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감치 신청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**20.까지**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명 기한까지 소명자료 및 의견진술 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감치 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)

팩스번호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